

2026년 제1회 공무원근로자(출국대기실경비원) 채용 공고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6년 제1회 공무원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9일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구분	채용직종	선발인원	성별	담당 업무
공무원근로자	출국대기실경비원	1명	남	- 입국 불허 외국인 계호 및 출국 등에 관련한 업무지원 - 출입국심사 업무 지원(자동출입국심사 안내 및 보안 구역 질서 유지 등)

가. 근무조건

- (신분)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근로자
 - (근무 기간) 채용일로부터 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음
 - (보수) 월 고정급 약 227만원(세전)
 -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근무 형태) 주 5일(월요일~금요일 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 9:00 ~ 18:00
(주 40시간)
- ※ 사무소 사정에 따라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변경 가능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①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②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③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④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 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⑥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1조 각호의 출입증 발급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⑦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나.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경비, 보안, 외국인 보호 및 계호 등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근무 경력만을 인정, 단 의무복무기간의 군 경력 제외
- (무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무도 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함)
※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함
- (외국어 능력 우수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소지자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합격자발표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어학 성적표 소지자는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어학성적을 반드시 사전 등록

어학성적 우대요건

* 영어 시험

시험 구분	TOEIC	TOEFL(IBT)	TEPS	G-TELP	FLEX
취득 점수	700	71	340	65(LEVEL2)	625

* 제2외국어 시험

시험 구분	공통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SNULT	FLEX	신 HSK	JPT	TORFL
취득 점수	60	750	5급 210	740	1단계

다. 가점사항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며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전형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 이하**일 경우,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응시자격 요건 **적격 여부**만을 심사
 -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 등) 탈락 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4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결정하고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서류전형 심사 기준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경력*	무도 자격증*	어학자격증	
100점 + 가점	60	15	15	10	3

* 차등적용

- (경력) 1년 이상 경력부터 인정하며, 2개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
※ 12개월은 1년, 일 단위 합산 30일은 1월로 인정
- (무도 자격증)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평점하며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단증만 인정
- (어학 자격증) 복수 제출 시 하나의 점수만 인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4. 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6. 10. 22.(목)
- 면접시험일 : 2026. 10. 26.(월)
 - ※ 면접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10. 30.(금)

- 합격자 등록 : '26. 11. 2. (월) ~ '26. 11. 4. (수)
- 채용 예정일 : '26. 11월 중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및 신원조사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 ※ 방문 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접수, 토·일 및 공휴일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접수처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겔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나.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 1부【별지 제1호】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 ※ 증빙자료가 없는 이력은 기재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별지 제7호】
- 채용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 제8호】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별지 제9호】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초본은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초본에 병역 사항 미표출 시 군복무 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우대요건 증빙서류
 - 유효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무도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각 1부
 - ※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발행처 관인(직인), 근무 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누락 시에는 경력 불인정,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별지 제10호】작성 제출
 -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등) 제출
- 사회형평가점대상자(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수급기간 명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수급기간 명시) ※ 수급기간 명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6.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공통사항)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 시 서류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 서류의 거짓 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별지 제11호】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최종합격자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담당자: 이민지, ☎ 02-2664-80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본인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행 2026년 제1회 공무원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원근로자 (출국대기실경비원)			(한자)		
생월생일						
주 소	(-)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상기 본인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 (보유기간 경과 시 즉각 폐기) * 거부 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응시표					
응시번호					
응시분야	출국대기실경비원	성명		생월생일	
2026년 월 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印					

주의사항

- 1.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2.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이 력 서

1. 인적 사항			
성 명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출국대기실경비원)
생월생일	※ 생년기재 불요 월 일	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복수국적 해당사항	☐ 해당 ☐ 해당없음		
가점 대상	☐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네 ☐ 아니요			

2. 우대사항

관련 분야 근무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주 00시간
		~			
		~			

무도 자격증	단증명	단증 취득일	검정 기관(발급기관)

외국어 능력	시험점수	시험일	시행기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서명)

자 기 소 개 서

성명	생월생일	응시분야
	월 일	공무직근로자(출국대기실경비원)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채용 예정 업무에 대한 이해,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3. 작성 시 출신 학교명과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또는 인)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경력 및 어학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근로자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u> <u>출입국·외국인청</u> <u>(사무소)</u>	근로자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u> <u>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u> <u>보유기관</u>	근로자 채용 관리	<u>학위, 경력사항 등</u> <u>응시요건 충족 및</u> <u>제출서류 진위여부</u> <u>확인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1조제1항(출입증발급제한 등)

1.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법(보안요원에 한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률위반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사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건처분이 미확정 된 자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